**9주차)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이해**

Q. ( )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Q. 영업비밀은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Q. 영업비밀은 속성상 속지주의를 벗어난다?

Q. 영업비밀의 요건으로는 ( ), ( ), ( )이 있다.

Q.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Q,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역설계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냈다면, 그 영업비밀은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Q.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된 정보라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Q. 실패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Q. ( )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Q. 종교상의 교의를 담은 문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

Q. 반사회적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A. 영업비밀

A. O

A. O

A.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비밀유지성)

A. O

A. X, 회사에서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분석으로 기술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본다.

A. O

A. O

A. 경제적 유용성

A. X, 경제적 가치가 없다.

A. X,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

Q. ( )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Q.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상대적이다?

Q.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판단할 때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

Q.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하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Q. 영업비밀은 일종의 기업비밀이다?

Q.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업비밀에 포함된다?

Q.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보호한다?

Q. 영업비밀은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A. 비밀관리성(비밀유지성)

A. O

A. O

A. O

A. O

A. O

A. O

A. O

A. O

**10주차)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Q.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기술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의 대상에 포함된다?

Q.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비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Q.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Q. (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된다.

Q.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한 영업상 관련 기밀 유출은 ( )에 해당한다.

Q.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Q.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서의 수익활동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역분석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Q. 영업비밀 침해는 ( ), ( )로 나뉜다.

A. X,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정된다.

A. O

A. X,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정된다.

A. O

A. O

A. 배임죄

A. 업무상 배임죄

A. O

A. O, 대학이나 비영리법인도 영업비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 X

A. 부정취득, 부정공개

Q.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은 취득 자체만으로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Q. 국정감사나 재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가 될 수 있을까?

**11주차) 영업비밀침해의 유형과 대응**

Q. 부정취득행위 후 별도로 사용·공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불법행위가 된다?

Q. 영업비밀을 공개한 상대방이 그 영업비밀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공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사후적 관여행위는 사용과 공개행위만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되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 )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Q. ( )은 근로자로 하여금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Q. 전직금지시간은 영업비밀 존식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Q. ( )은 영업비밀에 특화되어 그 내용의 비공지성을 유지하면서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업비밀 내용의 공개 없이 영업비밀 존재시점, 보유주체, 원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A. O

A. X, 이유에 관계없이 공공연히 공개가 되면 예외없이 영업비밀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A. O

A. X

A. O

A. 부정공개행위

A. 전직금지청구(경업금지청구)

A. O

A. 원본증명제도

Q.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타임스탬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해당 전자문서가 영업비밀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2주차)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법제도**

Q. ( )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Q. ( )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영업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Q.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지식재산권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Q.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방법(행위규제)에 의하여 지식재산의 보호를 하고 있다?

Q. 2018년 법개정 이후 개정법에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Q.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Q.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성과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은 상호 간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A. O, 등록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A. 부정경쟁방지법

A. 부정경쟁행위

A. O

A. O

A. O

A. O

A. O

A. O

A. 비밀유지협약

Q. ( )은 외부로 기술이 공개되기 전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자사의 기술임을 입증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임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14주차**

Q. ( )은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Q.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모두 창업자에게 귀속된다.

Q. ( )는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금을 존립의 기초로 한다.

Q. ( )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Q. ( )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Q. ( )은 창업의 위험성이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첨단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신생중소기업을 말한다.

Q. 영업의 인수에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도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승계된다?

Q. ( )은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무로,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A. 기술임치제도

A. 창업

A. O

A. 주식회사

A. 정관

A. 사업계획서

A. 벤처기업

A. O

A. 경업피지의무

**14주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이해**

Q. ( )은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Q. ( )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Q. ( )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Q.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에는 ( ), ( ), ( ), ( )이 있다.

Q. ( )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Q. ( )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Q. ( )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Q. ( )는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Q. ( )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Q.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개인정보의 요건으로는 ( ), ( ), ( )이 있다.

A. 정식절차

A. 간이절차

A. 즉결심판

A. 협상, 알선, 중재, 조정

A. 알선

A. 조정

A. 협상

A. 중재

A. 개인정보

A. X

A.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